

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191호서식]

특허권 · 실용신안권 · 디자인권 · 상표권 · 배치설계권
설정등록에 관한 자료

비고: "등록종류"란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배치설계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 (백상지 80g/㎡)